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기사 출처 표시 의무화 등〉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42호)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기사 출처 표시 의무화(안 제10조의2 신설) ...	3
2. 출처 표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안 제39조제2항2의2 신설)	7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10. 28.

다. 회부연월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시사·보도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이른바 ‘기사 베끼기’, ‘출처 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는 형해화되고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기사 출처 표시 의무화 (안 제10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 생산자 및 출처를 표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 및 해당 기사의 내용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밝혀야 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제도에서는 보도 및 신문기사 등의 저작권을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인정하면서, 동법 제27조를 근거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인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그러나 인터넷신문 등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이 있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사 자율심의 제도를 통해 기사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나, 해당 결과에 대한 처분이 경고 및 주의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기에 ‘기사베끼기’, ‘출처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아울러, 현행법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언론 관련 주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신문법에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기사 생산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은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뉴스포털) 등 언론 관련 주체가 규율대상으로서, 신문법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생산자와 출처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 등을 병기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기사 생산자’로 한정하거나(‘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혀야 한다’로 수정), ‘기사 생산자’ 또는 ‘인터넷주소 등’ 중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 및 ‘복제·배포’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실무상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며, 기사 이용 등 정당한 전재, 제휴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저작권법」으로 규율할 사안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과잉입법의 소지가 있어, 언론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사의 무분별한 복제·배포 행위 방지를 위한 출처 표시 등의 의무는 플랫폼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닌 기사 생산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신문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저작권법」 제27조와의 충돌 소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출처 표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안 제39조제2항2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안 제10조의2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2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① (생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안 제10조의2 신설과 병행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저작권법」 제138조제2호에서 출처 명시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벌과 형벌의 이중부과와 관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대법원 판례에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는 것은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 과태료를 납부한 뒤 형사처벌을 받아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별개의 제재이므로 동일 사안에 병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중복제재의 수준이 법 위반행위 억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 현행제도에서 비용적·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보도 및 기사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절차가 실효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저작물 이용자의 출처 명시 의무와 의무 위반 시 벌칙(징역,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문법」상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제재로서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형벌(징역, 벌금), 행정벌(과태료)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나(‘03.7.24. 2001헌가25), 중복 제재의 수준이 법 위반행위 억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저작권법은 전문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분쟁 조정과 침해 조사 등을 수행하나, 시·도지사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타 언론 기사 복제·배포 행위가 저작권 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휴 계약 등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단순 출처 누락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로서 비례성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으며, 자원 여력이 부족한 독립·비판 언론에 불리하게 작용해 시장 경쟁의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행 「저작권법」 규율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 신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협회 및 단체 의견

협회 · 단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신문윤리 위원회 (‘25.11.10.)	• (출처 표시 범위 : 수정) 기사 생산자와 출처 확인 가능한 인터넷 주소 등을 병기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기사 생산자’로 한정하거나(‘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혀야 한다’로 수정), ▲‘기사 생산자’ 또는 ‘인터넷주소 등’ 중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수정 필요(‘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 또는 해당 기사의 내용 및 출처를...(이하 생략)’으로 수정) • (저작물 이용 범위 : 수정) ‘기사의 일부’는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복제·인용한 기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핵심내용’으로 수정 필요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25.11.12.)	• (출처 표시 의무화 : 삭제)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 및 ‘복제·배포’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실무상 혼란과 부작용 예상 ▲기사 이용 등 정당한 전제, 제휴계약이 있을 수 있고, 「저작권법」으로 규율할 사안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과잉입법이며, 언론 활동의 과도한 위축 초래 • (출처 표시 의무 위반 과태료 : 삭제) ▲단순 출처 누락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로서 비례성 원칙 위배, ▲자원 여력이 부족한 독립·비판 언론에 불리하게 작용해 시장 경쟁의 불균형 심화 초래, ▲현행 「저작권법」 규율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 신설 불필요
한국언론 진흥재단 (‘25.11.14.)	• (출처 표시 의무화 : 수정) ▲기사의 무분별한 복제·배포 행위 방지를 위한 출처 표시 등의 의무는 플랫폼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아닌 기사 생산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신문법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현행 저작권법 제27조(“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의 충돌 소지를 검토해야 함.